



공동상속인들에 의한 상속침해와 그 회복방법

최은순/변호사 www.womenlaw.co.kr

갑 돌이와 갑순이 부부 사이에는 3남 3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 갑돌이가 사망하고 갑순이와 일부 자식들의 동의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장남이 전 재산을 취득하는 대신 다른 남자 형제들의 결혼시에 결혼비용과 독립자금 등의 명분으로 5,000만원씩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외국유학 중이던 막내 아들과 막내 딸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갑순이와 다른 형제들의 동의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막내 아들과 막내 딸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않고 있다가 최근, 막내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장남이 상속개시시보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절반만 주겠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은 5,000만원을 모두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당시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 막내 아들과 막내 딸이 10년이 지난 지금 상속 재산에 대하여 다시 이를 정하자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렇게 된다면 처음 정한 내용과 완전히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갑돌이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개시되는데 갑돌이가 유효한 유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991. 1. 1.부터 효력발생된 개정민법 이전의 구법이 적용되어 배우자인 갑순이 1.5, 호주상속인인 장남이 1.5, 다른 아들들과 미혼인 딸은 각 1, 기혼 딸은 0.25의 각 비율로 법정상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돌이 사망 후에 이들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거쳐야만 그 상속재산분할 협의회가 유효한데, 막내 아들과 막내 딸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러한 상속재산분

할 협의는 원칙적으로는 무효인 것입니다. 또한, 장남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막내 아들과 막내 딸의 동의없이 이것이 불가능한데 다른 상속인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이 이들의 인감을 위조하여 이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를 처리하였을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공소시효인 5년이 넘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상속인들만이 상속재산을 상속 등기하거나 분할해 버린 경우에 제외된 다른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회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제기 기간이 지나버려 소송을 통해서는 새로이 상속분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다른 상속인들끼리의 협의내용으로 장남이 다른 형제들의 결혼시에 주기로 한 돈 5,000만원의 청구는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비록 막내 아들이 이런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도 모두 동의하였고 장남도 막내 아들에게 이 금액을 주어야 한다고 승인하고 그 금액을 감액하고 있으므로 막내 아들 입장에서도 위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막내 딸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정리되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속인들끼리 토론하여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실 수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PPFK